

안전은 권리입니다

2019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안)

2019. 3. 28(목)

네트워크협력실 민간기관평가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I. 석면조사기관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 전반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석면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

❖ 법적 근거

[법 제38조2제6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0조의4]

- ①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②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 ③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사업추진 방침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186개소)* 평가
 - * 평가계획을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 기관(16개소)은 제외
- 평가매뉴얼 개발 전문가 회의, 전 기관 설명회, 대표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항목 마련 및 평가기준 강화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평가방법 표준화 및 평가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 평가반 구성 · 운영 및 사전교육 개최
- 계획 공고 시 평가 기준, 절차 · 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사전 안내
-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기관의 경쟁력 향상

❖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II. 그 간의 경과 및 사전검토 내용

□ 사업추진 경과

- [' 15.6.24] 석면조사기관 평가 및 석면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회의 개최
 - * [장소] 고용노동부 소회의실, [참석] 고용부 보건사무관 등 3명, 안전공단 화학물질관리 팀장 등 3명
- [' 16.5.27] 석면조사기관 평가 매뉴얼 검토 회의
 - * [장소] 서울시 센트럴프라자, [참석] 고용부 보건사무관 등 2명, 안전공단 2명, 민간 석면 조사기관 대표자 3명
- [' 16.7.13~9.9] 평가 매뉴얼의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 평가 실시, 평가 매뉴얼 세부내용 보완 및 확정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16년 시범평가 결과 >

- 평가 대상 42개 기관 중 상위그룹 7개소(16.7%), 중간그룹 19개소(45.2%), 하위그룹 16개소(38.1%) → 평균 평가점수 66.3점(100점 만점)

합 계	상위그룹		중간그룹		하위그룹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50~59점	50점 미만
24개소(100%)	2개소(4.8%)	5개소(11.9%)	10개소(23.8%)	9개소(21.4%)	12개소(28.6%)	4개소(9.5%)

※ 법률상 평가 실시 근거는 없었으나, 고용노동부 2016년도 산재예방분야 업무추진 지침 [석면조사기관 정기점검]에 근거하여 42개 석면조사기관 평가

- ['17.1.18] 평가체계 및 평가 매뉴얼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대표 기관 간담회 개최

* [장소] 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 [참석] 고용부 산업보건과장, 보건사무관, 공단 직업건강 실장, 화학물질관리부장, 7개 석면조사기관 등 14명

- ['17.1.18] 석면조사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매뉴얼 개편(안) 마련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평가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평가항목, 지표 개선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구분	'16년 시범 평가	개편 내용
평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서 (안전공단 및 외부전문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공단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평가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① 경영요건, ② 인력·시설·장비, ③ 신뢰성 보증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분야 ① 운영체계, ② 업무성과 * 기존의 평가사항 누락 없이 포함
평가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36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항목 32개 문항 * 인적자원 보유·관리 분야 등 강화
평가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0점 만점 평가 * 별도의 평가등급은 구분하지 않고 평가점수만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계 평가등급(1,000점 만점) S, A, B, C, D등급
평가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석면조사기관 평가 근거 법제화 및 평가방법 모색 ▪ 석면조사기관 평가방법 등 차등 관리방안 마련 ▪ 홈페이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① 감독면제, ② 홈페이지 공개, ③ 공공공사 석면조사 발주시 우선 활용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기관 제재 ① 연 2회 점검, ② 정부포상 제외, ③ 기관 제재 강화 등

- [' 17.2.24] 석면조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

* [장소] 안전공단 대강당, [참석] 107개 기관, 약 150여명 참석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사전검토 내용

- 수행업무별 평가점수 보정 방안 검토

-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시범평가 시 수행 업무 분야에 한하여 평가 실시

업무분야	총점	평가 제외문항
석면조사	310	3.7~3.11
완료후 농도측정(산업안전보건법)	325	3.3~3.6
석면배출농도측정(석면안전관리법)	300	3.3~3.6, 3.8, 3.9
석면조사+완료후 농도측정	370	-
석면조사+석면배출농도측정	345	3.8, 3.9
완료후 농도측정+석면배출농도측정	325	3.3~3.6
석면조사+완료후 농도측정+석면배출농도측정	370	-

-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최종평가점수 : 평가점수 / 업무분야에 따른 총점 × 100]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검토안

- 변경된 평가체계의 평가문항에 적용하여 평가 실시

업무분야	총점	평가 제외	
		'16년 평가문항	'19년 평가문항
석면조사	870	3.7~3.11	B2.3.2/B2.4~2.6
완료후 농도측정(산업안전보건법)	940	3.3~3.6	B2.2.1/2.2.2/2.3.1
석면배출농도측정(석면안전관리법)	910	3.3~3.6, 3.8, 3.9	B2.2.1/2.2.2/2.3.1 B2.3.2/B2.6
석면조사+완료후 농도측정	1,000	-	-
석면조사+석면배출농도측정	970	3.8, 3.9	B2.3.2/B2.6
완료후 농도측정+석면배출농도측정	940	3.3~3.6	B2.2.1/2.2.2/2.3.1
석면조사+완료후농도측정+석면배출농도측정	1,000	-	-

-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총점을 1,000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 [최종평가점수 : 평가점수 / 업무분야에 따른 총점 × 1,000]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전담 평가반 구성 필요

- [평가반] '16년 시범평가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 42개소 대상, 일선기관 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관 및 공단 직원(46명)이 평가 실시
 - '19년 평가는 전국 전수평가(186개소) 및 전담조직 민간평가센터 인력만으로 평가 실시

○ 검토안

- [평가반] 공단 민간평가센터 직원 12명
- * 평가반장은 차장대우 이상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지도사 보유 직원으로 구성
 -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활용

❖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등급 체계 적용 여부 검토

- [배점] 370점 만점 평가로 별도의 평가등급은 구분하지 않고 평가점수만을 부여하여 평가 실시

※ 평가항목 3가지 ① 경영요건 5개 문항 70점, ② 인력,시설,장비 등 16개 문항 130점, ③ 신뢰성 보증 체계 15개 문항 170점, 총 36개 문항(총점 370점)

- 민간기관평가 체계 통일 및 전국 전수평가에 따른 변별력 확보 필요

○ 검토안

- [배점] 평가배점을 370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변경 필요

- 평가분야를 3개에서 2개 분야(운영체계, 업무성과)로 단순, 명확화

변 경 전('16년)			변 경 후('19년)		
평 가 항 목	문항수 (36)	점수 (370)	평 가 항 목	문항수 (32)	점수 (1000)
1. 경영요건	5	70	A. 운영체계	15	400
2. 인력·시설·장비 등	16	130	B. 업무성과	17	600
3. 신뢰성 보증 체계	15	170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등급] 점수평가에서 5단계 등급 평가로 변별력 확보 필요

등급	기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평가문항 통합 및 평가방법 개선

- '16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평가문항 개선 필요
 -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범평가 결과 및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항목 개선

○ 검토안

- 일부 평가문항 통합 및 평가방법 개선
 - 평가문항 통합(2문항) : 종합기술지원
 - 평가방법 개선(7문항) : 지정인력 경력 산출, 흡후드 점검, 유량보정기 교정, 포상 실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기관평가 대상 제외 대상 검토

- 평가기간 내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한 평가 방안 검토 필요

○ 검토안

- 평가대상기간 중 석면조사, 농도측정(완료후, 석면배출) 업무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 평가 기관 제외 처리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III. 평가 운영

- 평가기간 : ' 19.4월 ~ 12월말
- 평가대상 : 석면조사기관 186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계	186	34	51	32	18	29	22

- 평가주체 : 본부 네트워크협력실, 인천지역본부 민간평가센터



■ 석면조사기관 평가 계획

- 추진절차



감사합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